

중대재해 대응 매뉴얼

REV.0

2022. 09

경남기업 안전보건실

CONTENTS

- 01 | 대응팀 구성 및 운영원칙
- 02 | 중대재해 보고 및 대응 FLOW
- 03 | [1hour] 현장 초기대응 체계
- 04 | 세부 업무분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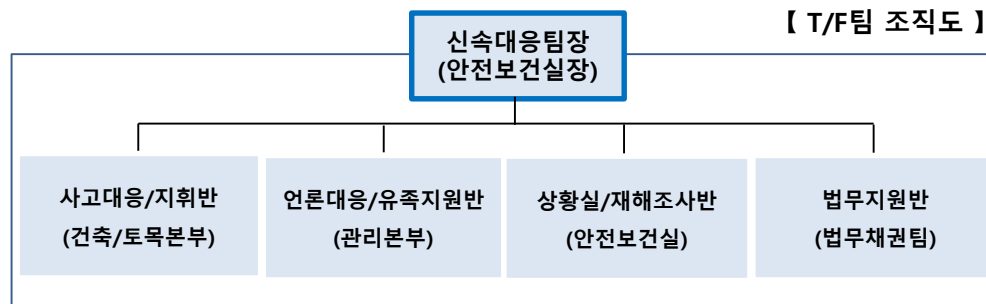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 대응 매뉴얼

1. 대응팀 구성 및 운영원칙

① 구성 : 대응팀장(안전보건실장, CSO) 산하 4개반

② 운영원칙

- **사고즉시** 응급조치 및 보고
- **D+30분** 이내 T/F팀(신속대응팀) 가동
- **D+1시간** 이내 초기 대응 완료
- 대관청, 언론 등 재해관련 정보 **One Voice** 운영
(※ 상황실 운영 : 상황반장, 상황기록 실시간 작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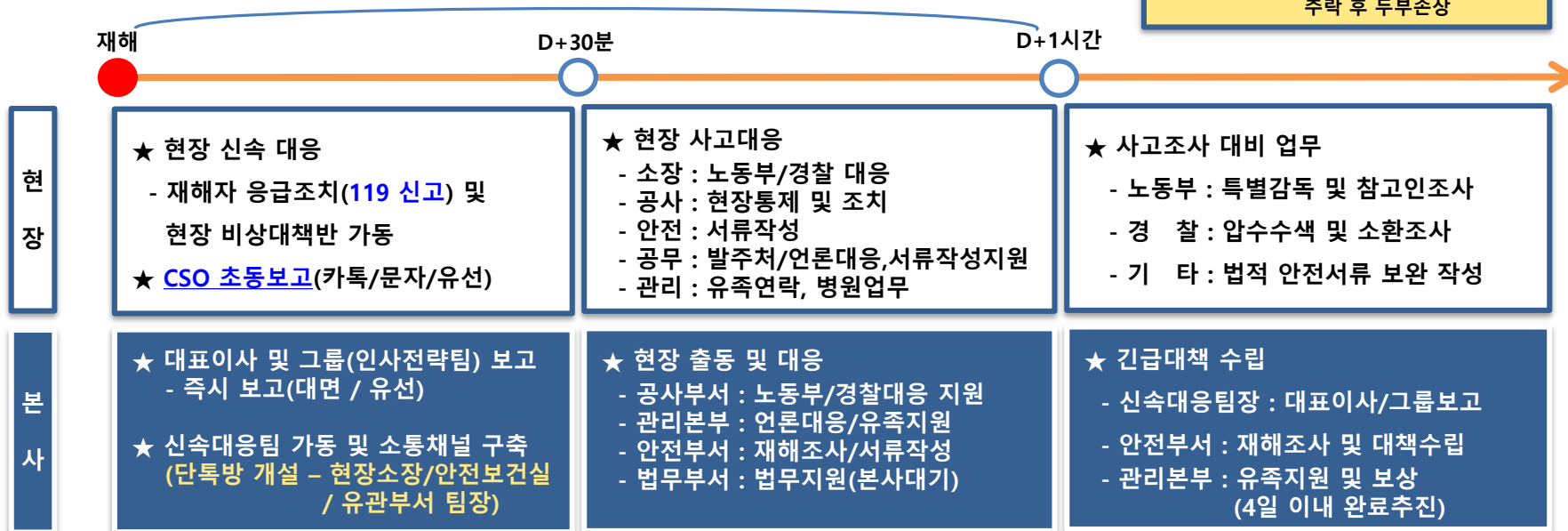


★ CSO 초동보고 내용(카톡/문자/유선)

- 시간 : 0월 0일 0시
- 장소 : 000 현장, 103동 7층 계단실
- 유형/규모 : 추락/사망0명(협력사,00세)
- 개요(추정) : 계단실 거꾸집 작업 중 추락 후 두부손상

2. 중대재해 보고 및 대응 FOLW

Golden Time



3. [1hour] 현장 초기대응 체계

순서	시간	업무	업무 처리 내용	담당부서	관계기관	
1	즉시	응급 조치	재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(119 신고)	현장	최초발견자	119/병원
	즉시 ~ 30분	현장 보존	작업중지/근로자 대피/현장보존(Police Line 및 가림막 등 외부차단) 증빙자료 확보(동영상 및 사진촬영)		공사팀	경찰서 노동지청
		재해 보고	중대재해 발생 보고(본사, 경찰서, 노동지청)		현장소장	
2	즉시 ~ 60분	사고 조사	사고상황조사(목격자 및 작업지휘자, 녹취자료 확보, CCTV 확인 등)		안전팀	
		현장 통제	외부인 출입금지 조치, 잔여 근로자 파악, 추가 위험요인 제거		공사팀	
		경찰서 대응	주요원인 및 책임자 확인(현장 안전조직도 및 지휘계통 확인) 협조		현장소장	경찰서
		유족 연락	유족 연락 및 가족관계 파악, 영안실 대기조 편성 및 상황공유		관리팀	병원
		서류 작성	사고보고서 및 상황도, 목격자진술서 입증자료 수집(안전교육, TBM일지, 보호구지급대장, 작업계획서 등)		안전팀	
		노동부 대응	중대재해발생보고서 보고/제출, 현장 조사 협조	현장소장	노동지청	
		언론 대응	사고관련 정보전달(정확히 밝혀진 사실만 전달, 추측 금지), 인터뷰 등 ※ 언론 현장취재 요청, 동영상, 사진 본사 지침에 따라 대응	공무팀	언론사	
발주처 대응	발주처 보고서 작성 및 현장 사고조사 협조	공무팀	발주처			

✓ 업무대행자 : 업무담당자 부재시 각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업무분장표 상 대행자가 해당업무 수행

✓ 주말 및 휴일 중대재해 발생 시, 휴가자 포함 전원 즉시 현장 복귀하여 해당업무 수행

4.1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	관계기관
1	병원후송 / 장례 및 유족지원	① 재해자 긴급 병원후송(즉시 119 or 129 후송, 보건관리자 있는 경우 응급 조치 하면서 직접 후송하는 것이 빠를 경우에는 가능), 대형병원 이용	현장	공사팀	119구급대 병원 협력회사 대표/임원과 협조하에 진행
		② 영안실 대기조 편성 및 상황 공유	현장	관리팀	
		③ 유족 연락 및 가족관계 파악	현장	관리팀	
		④ 분향소 준비(영안실 제상, 사진 확대 및 조화 조치)	현장	관리팀	
			본사	인사총무팀	
		⑤ 변사자는 경찰과 검찰이 검시(檢屍)(형사소송법 제222조) /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받아서 부검지시. 검시/부검 후 발인 등 장례절차 진행	현장	관리팀	
본사	법무채권팀				
⑥ 장례비 정산, 발인 및 장례절차 지원	현장	관리팀			
	본사	인사총무팀			
2	현장보존 목격자진술 확보 등	① 작업중지 / 근로자 대피 / 위험요인 제거 / 현장보존	현장	공사팀	
		② 사고상황조사(대상 : 현장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) - 사고경위, 해당공정 작업지시내용, 평소 작업방법, 목격내용, 안전시설, 보호구 착용현황, 안전교육 실시여부, 사고관련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, TBM 주요내용, 동영상 자료 - 현장 상황기록 본사 상황실 실시간 공유 및 One Voice 운영 - 녹취 자료(사고발생 30분 이내 완료, 3인 이상 시 동의 필수)	현장	안전팀 (지원:공사팀)	
			본사	안전보건실	

4.2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	관계기관
3	중대재해 발생보고	① 경찰서보고 : 6하 원칙에 의거 재해발생 보고(일시, 장소, 인적사항, 재해발생경위, 재해정도)	현장	안전팀	경찰서 노동지청 발주처
		② 노동부보고 :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작성(소정양식 - 사업장개요, 재해자 인적사항, 재해발생개요, 사고경위, 사고원인, 재해발생상황도) FAX 전송	현장	안전팀	
		③ 본사보고 : 사고보고서, 사고상황도(사진), 진술서(목격자,담당기사)	현장	안전팀	
		④ 발주처보고 : 사고보고서 외(발주처 요청서류)	현장	공무팀	
4	현장조사	① 경찰서 -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책임자 확인 (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해죄 적용),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확보, 현장 안전조치도 및 작업지휘 관련 상황 확인 - 사고당일 참고인조사 : 목격자, 작업지휘자, 현장소장, 안전관리자, 장비운전기사 등 → 문답조사 내용 정리하여 본사 보고 / 참고인 조사시 변호인 선임 대동(본사 법무채권팀 지원)	현장	현장소장 안전팀/공사팀	경찰서 노동지청 안전공단
			본사	공사팀(건/토) 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
		② 노동지청 -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사고원인, 안전상조치, 보호구지급 등 기초 조사 → 안전공단에서 노동부로 의견서 제출 - 참고인조사 : 근로감독관이 목격자, 동료작업자, 하청 현장소장 또는 작업지휘자, 원청 안전관리자 상대로 사고원인 및 안전조치, 안전조치, 위험성평가 등 산안법 제38조(사업주의 안전조치) 및 63조(도급인) 적용 확인	현장	현장소장 안전팀/공사팀 협력회사 현장소장/공사	
			본사	공사팀(건/토) 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

✓ 사고발생 즉시 대응자료 준비와 조사 지원을 위해, 인근 현장 안전관리자 및 본사 인원 투입하여 사고보고서 / 입증자료 수립 등 본사 지원

4.3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	관계기관
5	정기(특별) 감독	① 노동부 광역 근로감독관(사안에 따라 4명~10명 2~5일 수감) - 안전보건경영체계/안전보건관리체계(조직) -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 관리, 법령요지, 안전보건교육, MSDS 등 - 유해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,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-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, 안전관리비 등	현장	현장소장 안전팀 공사팀	노동지청 안전공단
			본사	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
		현장	현장소장		
		현장	관리팀		
6	산안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조사지원	③ 과태료 부과 및 납부 / 벌금에 해당되는 산안법 위반사항은 별도로 인지사건으로 수사	본사	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검찰 경찰서 노동지청
			현장	안전팀/공사팀	
		① 소환조사, 수사지휘영장(압수수색, 통화내역조회, 체포구속)	본사	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
		② 범죄인지 : 중대법 및 산안법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)에 근거 피의자조사 받는 절차임, 하청 현장소장(산안법 제38조 - 안전조치), 관리감독자(형법 제268조 -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) 원청 현장소장(산안법 제63조), 장비사고의 경우 장비회사 대표(산안법 제81조), 대표이사(중대재해처벌법 제4조, 제5조) ※ 2명 이상 사망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피의자 구속여부에 대하여는 검찰 지휘 품신을 받게 됨	현장	안전팀/공사팀	
		본사	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	

✓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2조(구속영장신청기준) 산안법 제38조,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·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(건설업의 경우 2회)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

4.4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관계기관	
7	중대재해 처벌법 입증서류 준비	①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②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, 안전/보건관리자 선임제 ③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·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(반기 1회 이상)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,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 사항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·예산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1회 평가 관리 ⑥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⑦ 재해발생 등에 대비,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(반기 1회 이상) -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, 피해자 구호조치,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⑧ 제3자 도급·용역·위탁시, 종사자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·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(반기 1회 이상) -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·절차, 안전·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⑨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⑩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확인(반기1회이상) 및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(인력배치, 예산 추가편성 등) *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근거 제시필요, 위임전결규정/이사회의회의록 등 * 회사대표에 대한 수사이므로 관련자 휴대폰, 이메일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음	현장	안전팀 (지원:공사팀)	경찰서 노동지청
			본사	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

4.5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	관계기관
8	산안법 등 입증서류 준비	①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(원/하도급) ②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(장비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) ③ 선임신고서(안전보건총괄책임자 / 관리책임자 / 안전보건관리자) ④ 사업주 협의회 회의록 ⑤ 안전교육일지(채용, 정기, 변경, 특별), 보호구 지급대장 ⑥ 유해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검사증 등 ⑦ 중량물취급 및 장비작업계획서 ⑧ 사고보고서, 사고상황도(사진), 진술서(목격자,담당기사 - 문답형식) ⑨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지정서 ⑩ 위험성평가 및 사전회의록 ⑪ 유해위험 작업 사전 안전점검표 ⑫ 작업일보 ⑬ 시공계획서(안전계획서) 등 ⑭ 안전보건관리 체계(조직도표)	현장	안전팀 (지원:공사팀)	경찰서 노동지청
			본사	안전보건실 법무채권팀	

4.6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	관계기관
9	작업중지 및 해제신청	① 작업중지(산안법 제55조) - 부분작업중지 :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 중지명령 - 전면작업중지 : 토사·구축물의 붕괴, 화재·폭발,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경우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② 안전작업개선계획서 제출 및 작업중지 해제요청 또는 안전진단명령 - 노동지청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	현장	안전팀 공사팀	노동지청
			본사	공사팀(건/토) 안전보건실	
10	합의 (가합의) 및 처벌불원서	① 합의금 산출 : 자문노무사 ② 합의팀 구성 - 협력회사 임원 및 현장소장, 자문노무사, 본사 인사총무부서 지원 ③ 가합의(금액합의) 합의금의 전체 지급 수준을 먼저 결정하고, 전체 합의금 중 장의비(2천만원 이내에서 실비지급) 선지급 하고, 나머지 차액은 유가족이 수급권자 및 상속권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공증 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가합의 진행 ④ 처벌불원서(탄원서) 징구	현장	관리팀 공무팀 (협력업체)	
			본사	인사총무팀 법무채권팀 공사팀(건/토)	

4.7 세부 업무분장

순서	업 무	업 무 처 리 내 용	담당부서	관계기관	
11	합의금 지급 (공증) 및 산재/근재 청구준비	① 합의서 작성 ② 합의서 공증시 준비서류 - 회사대표(법인) 위임장 1부(공증용), 대표(법인) 인감증명서 및 도장(공증용) 수입받은자 주민등록증 각1부 및 도장.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(공증용) ③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- 유족에 설명/안내,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(외국인 또는 형제자매 등)의 경우에는 산재유족 급여 일시금을 선지급하고, 회사 대체지급 청구 ④ 산재 청구 준비서류 - 유족보상(연금/일시금) 및 장의비 청구서 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 - 사고사실확인원(경찰서) / 119구급증명원(소방서) - 재해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/ 기본증명서(상세) / 주민등록등본(말소자등본) /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/ 제적등본 / 산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등본(상세), 상속권자 및 수급권자 인감증명서 (* 중국국적의 경우 친족관계증명서, 거구호민증, 결혼증) - 임금(노임)대장사본(사망직전 4개월분) 1부 - 근로계약서/목격자진술서 1부 - 작업일지/도급계약서, 하도급계약서 ⑤ 근재보험 청구 - 산재보험급여 수령 이후 산재보험 급여지급확인원 발급받고, 위 (4)항의 서류 등 구비하여 청구	현장	관리팀 공무팀 (협력업체)	근로복지 공단 근재보험 회사
			본사	인사총무팀 법무채권팀 공사팀(건/토)	